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10. 25 선고 2021가단10833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배아영, 최한나

피 고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부) C, (친권자모) D

변 론 종 결 2022. 9. 27.

판 결 선 고 2022. 10. 2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E 사이에 2018. 8.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E(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등기계 2018. 8. 16. 제133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E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소외 E의 1/3 지분을 증여계약으로 취득한 자이다.

나. 소외 주식회사 F은 2013. 2. 19. 소외 E에게 790만 원을 상환기일 2018. 2. 19., 대출이자율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에 의한 변동금리(3개월 CD금리 + 연 8.5%)로 하여 대여하였는데, 소외 E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하자 2014. 10. 28. 소외 G(현재 상호: H) 유한회사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9. 12. 13. 위 H로부터 소외 E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다.

다. 원고는 소외 E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가소28754호로 양수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1. 4. 20. ‘소외 E은 원고에게 13,202,215원 및 그 중 6,318,028원에 대하여 2021.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소외 E은 2018. 8.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8. 8. 16.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은 소외 E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이고, 2018. 8. 6. 당시 소외 E의 채무는 여러 금융기관에 대하여 합계 4천만 원 이상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소외 E은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가소28754호 양수금 판결문에 의한 채무가 있는데,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1/3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처분하였으므로 그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소외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조모인 소외 I가 실제 그 전부를 매수하여 각 1/3 지분에 관하여 장남인 소외 E과 장손인 피고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인데, 소외 E의 위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소외 E의 동생이자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C이 일부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관하여는 소외 E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경매를 취하시키고, 소외 C이 소외 E의 채무일부를 변제한 대가로 소외 E의 지분에 관하여 자녀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소외 E의 채무를 면탈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피고측은 소외 E의 여러 채권자 중 1명(채무의 일부 대위 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자)인데, 소외 E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1/3 지분으로 우선변제받은 셈이어서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별지]

부동산 목록

경상북도 의성군 대 360㎡ 끝.

